

노루페인트 표준시방서

개정일 : 2024.01.02

도 장 시 방 서

[화이어키퍼 DFW-100F]

□ 개요

본 도료는 방염 수성페인트(투명)으로, 수성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방염도료로써, 합판, 목재 등과 같은 가연성 소지에 도장되어 화재발생 초기에 연소를 방지, 지연시켜주는 특수 기능성 도료로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방염도료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다. (주)노루페인트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.

□ 적용범위

- 방염성능을 요구하는 합판, 중밀도섬유판(MDF), 목재소지 마감용
-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에서 합판, 목재의 방염처리 도장용

□ 제품구성

구분	제품명	도막두께	도장횟수	도장방법	색상
하도 (필요 시)	그린락카 샌딩실라	30 μ m	2	B,R,S	투명
상도	화이어키퍼 DFW-100F	80 μ m	2~3	B,R,S	투명 (무광)

※ B-Brush, R-Roller, S-Spray

□ 표면처리

- 소지 표면의 각종 오염물질은 전면 제거하여야 한다.
- 젖은 나무는 완전건조 시키고, 곰팡이는 완전 제거 후 도장을 실시한다.
- 소지 표면의 거친 부분은 연마지 #180~220 목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한 후 도장한다.

□ 도장방법

1. 하도

- (1) 표면처리가 끝난 후 그린락카 샌딩실라를 소지 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붓, 롤러 또는 스프레이로 30 μ m이 되도록 2회 도장한다.
- (2) 필요 시 상수도물을 부피비 최대 5%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한다.
- (3) 하도 2회 도장 시 재도장 간격은 하도 1회 도장 후 20 $^{\circ}$ C 기준 최소 2시간 경과 후이다.

2. 상도

- (1) 하도 도장 후 20 $^{\circ}$ C 기준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 화이어키퍼 DFW-100F 를 붓, 롤러 또는 에어스프레이로 건조도막두께 80 μ m이 되게 곧 2~3회 도장한다.
- (2) 이 때, 필요 시 지정 희석제 상수도물을 도장기구에 따라 최대 부피비 20% 이내로 희석하여 도장한다.
- (3) 상도 2회 도장 시 재도장 간격은 1회 도장 후 20 $^{\circ}$ C 기준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.

▣ 도장 시 주의사항

1. 5℃ 이하에서 도장 시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, 건조 중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작업을 금한다.
2. 우천 시, 혹은 습도가 높은 환경(85% 이상), 기온이 낮은 날(5℃ 이하), 기온이 높은 날(40℃ 이상)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금한다.
3. 습기가 많은 소지에는 부착성이 떨어지므로 도장부위가 완전 건조된 후에 도장해야 한다.
4. 사용 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5. 반복하여 도장하게 될 경우 후속도장 가능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.
6. 타 제조사 제품 혹은 타 도료와의 혼용을 절대 금한다.
7. 수분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이슬점온도 3℃ 이상이 되어야 한다.
8. 방염처리자는 제품 용기에 부착된 방염제 합격표시를 방염처리한 대상물의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
9. 특수한 소지, 선행 도막 또는 구도막 보수 시 시험도장을 통한 부착력 확인 후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▣ 취급 시 주의사항

1.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. (냄새맡기, 연료 등으로 사용 금지)
2. 제품 운송, 보관 및 취급 시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여 상온(5~35℃)에 보관하고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킨 후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.
3. 운반 및 취급 시 제품손상 또는 부상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를 밀폐하고 손잡이를 정확히 잡고 운반하며, 내용물 유출 시 모래 등으로 흡수시켜 제거하여야 한다.
4. 섭취했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. 전문의 진단 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조한다.
5. 증기흡입, 피부 접촉 시 두통,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, 가급적 필요한 보호구(마스크, 보호장갑, 보호안경 등)를 착용 후 작업하여야 한다.
6. 본 제품은 장기간 보관 시 변질(색상 차이, 이물질 혼입, 굳음 등)이 있을 수 있으니 저장기간 내 가급적 빠른 시일에 사용하여야 한다.(제조일 기준 12개월)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루페인트 소비자문화센터로 문의하거나, 홈페이지에 게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(GHS-MSDS)를 참조한다.